

의안번호	2203300
의 퇴 인	황희의원
회 답 일	2024. 8. 29
추계번호	24C2998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설립 등)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이하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음 국가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6조(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는 다음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문화예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이하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재량규정
3	안 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설립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결성)	
3	안 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2. 상세사유

□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의 설립·운영(안 제5조)

- 개정안은 안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문화예술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조직, 인력, 사업계획 및 지원규모 확인이 어려운바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의 결성(안 제6조)

- 개정안은 문화예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문화예술기술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조합의 투자규모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 조세에 대한 특례(안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재정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감면요건, 감면율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나, 현행 세법은 문화예술기업 육성과 관련한 세액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는 감면 세액의 규모를 추계하기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 또는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